

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- 0429호

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/IEC 17011에 의거 「비파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(KOLAS-SR-004,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-0064호, 2012.02.17.)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02일

국가기술표준원장

「비파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 개정 고시

1. 개정이유

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과 관련된 국제표준(ISO/IEC 17025 -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)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, 일부 자구 수정 및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

2. 개정내용

- 가. 국제표준(ISO/IEC 17025 -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) 개정 내용 반영(안 제1항 등)
- 나. 자구 수정 및 용어 명확화(안 제2.2항 등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